

함병선 장군 공적비 훼손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1. 고 소 인

고 함병선 장군의 유족

주 소 :

연락처 :

2. 고 발 인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노조,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연대,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오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고발인 대표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

연락처 : 02-737-0403

3. 피고소·피고발인

1)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김창범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연락처 : 064-724-4343~4

3)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문철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연락처 : 064-723-4301~2

4) 자문위원단

I. 고소·고발 취지

고소·고발인은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故 함병선 장군 공적비를 손괴하고, 공적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피고소·피고발인들을 고소·고발합니다.

고소·고발인은 제주도청에 불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피고발인들은 현재까지 불응함으로써 공용물손상죄, 재물손괴죄, 사자명예훼손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

기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의 죄,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기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범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고소·고발인 지위

1. 고소인 지위

고소인 함상균은 함병선 장군 막내 아들이자 부친의 공적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며, 유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 이설 및 손괴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명예 및 추모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2. 고발인 지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고발인은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여 법치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보존 및 공공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입니다. 고 함병선 장군의 아들 함상균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회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Ⅲ. 사건 경위

함병선 장군은 제주4·3공산 내란을 진압하신 제2연대장으로서 6·25 전쟁 영웅이시고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 등에서 최고 훈장(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미 은성무공훈장, 자유대만 최고무공훈장 등)을 받으신 명장이셨습니다.

함병선 장군 공적기념비는 4·3진압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49년 6월 1일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서귀포신사터(현 기상청)에 세워졌다가 1990년대 서귀포 진보 청년단체들에 의하여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함병선 대령의 미망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 소유인 특전사휴양소 후문 토지에 이설 설치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함병선 장군 공적비 이설 전 사진).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는 --- 년 월 일 제주도 보훈지청에 함병선 장군 공적비에 대하여 현충시설 지정 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제주도청은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제주도청 행정자치국장은 유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로 각하처분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제주도청과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 장군 공적 기념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시다(갑 제2호증: 2026. 4.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자치국장 면담 결과 기록).

제주도청 등 3개 단체는 4·3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4·3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함병선 장군 공적비의 이설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함병선 공적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긴 것은 그를 기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의 죄상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살아있는 '죄의 기록'으로서 후대에 준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비석을 반면교사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부 공식 보고서가 나온 지 23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의 책임을 철저히 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적돼 왔다”며 “누가 가해자인지 역사 앞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객관적 사료와 자료가 도민과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은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도민과 함께 바로잡기 위한 두 번째 자리”라며 “더 이상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4·3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진실을 알려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갑 제3호증: 제주경제일보, 제주도, '4·3 왜곡 비석'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세우다, 2026.03.29.).

고소·고발인은 피고소·피고발인들에 의해 위와 같은 반역사적 위법행위가 자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6년 4월 1일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4월 3일 4·3평화공원 내 공적비 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원형이 훼손되어 공원 외진 곳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함병선 공적비 이설 후 사진).

2026년 4월 6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는 제주도청 행정자치국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담에서 고소·고발인 측은 공적비 원형 복구와 안내판 내용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국장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 답변 속에는 피고소·피고발인 측은 시정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 2026. 4.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자치국장 면담 결과 기록, 갑 제4호증: 현충시설 관련 시정요구 및 면담 요청의 건).

IV. 위법성

1. 공적비 원형 훼손 문제

원형 훼손 행위와 기단을 밟도록 한 행위는 손괴죄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은 함병선 장군 공적비의 기단인 3단 받침대를 제거하여 공적비 뒤쪽 바닥에 깔아 공적비 후면을 보려면 반드시 밟고 지나도록 한 것은 원형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피고발인측이 이와 같이 원형보존을 하지 않은 채로 이설한 행위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사실이었음을 자치행정국장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행

위는 손괴죄의 고의와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4·3평화공원 방문자들이 공적비 뒤에 기록된 글을 보려고 할 경우 기단을 밟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웅인 고인과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도록 할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광주 5·18묘역 땅바닥에 매립한 전두환 비석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판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부관참시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에서 세운 공적비(공용물)를 함병선 장군을 모독할 목적으로 기단을 제거하여 발로 밟게 설치한 행위는 명백하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6조, 제69조, 제99조) 위반의 불법행위이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141조 공용물의 파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함병선 연대장 공적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은 허위사실 일색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문제

안내판 설치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와 언론 보도를 통한 허위사실 확산은 직권남용 및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시정요구 후에도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세운 진실

함병선과 제주4·3

Ham Byung-sun and Jeju4·3

제주4·3 당시 1948년 11월부터 제9연대에 의한 강경 진압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초토화 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제주도 주민 2만 명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했다.

1948년 12월 제주 주둔군이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됐다. 제2연대는 여순 사건을 진압한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로서, 제3대대는 서청 단원들로 구성됐다. 제2연대장 함병선(咸炳善)은 일제 지원병 출신으로, 일본군 시절 전투 경력을 인정받아 제주 진압 임무를 맡았다.

제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즉결 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함병선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제주 사

건을 발근색원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미군 보고서는 제2연대의 작전에 대해 “마을 사람들을 재판의 혜택도 없이 즉석에서 대규모로 처형했다”고 기록했다.

1949년 1월 4일의 육·해·공 연합 작전, 1월 12일의 ‘의귀리 전투’, 2월 4일의 제주읍 봉개지구 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집단 희생을 당했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 총살 사건인 ‘북촌 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가량이 제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또한 함병선은 1948년 12월, 1949년 6월 1일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이름으로 세워진 공적비 내용에 올바른 사실을 적어두고자 안내판을 세운다. 제주시 오동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내에 있던 공적비를 ‘4·3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의 논의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곳 제주4·3평화공원으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2026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위의 안내판 내용은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합니다.

허위사실 1: 제주4·3 당시 1948년 11월부터 제9연대에 의한 강경 진압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제9연대는 공식적으로 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개 작전을 전개하였지 초토화작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초토화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 증언자 중에 초토화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증언으로 마치 초토화작전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초토화작전이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당시 4·3 진압군인들이 초토화라는 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도 보고서에 함께 소개하였어야 합니다(갑 제5호증: 전민정,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2024. p.209, 297, 368). 보고서는 사실 왜곡으로 일관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 공적비 안내판 내용입니다. 안내판은 제9연대가 하지도 않은 초토화작전을, 더군다나 제2연대가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은 소개명령에 불응하여 남로당 측에 합세하기 위해 한라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소개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여 총살

한다는 포고령에 따라 정당하게 사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이를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과 남로당(공산당)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4·3공산 폭동 내란과 이에 대한 군경의 진압행위를 북한에서는 민중항쟁, 군에 의한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갑 제6호 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12 [북한·러시아·무장대 자료편] 목차) 이를 제주도 희생자들 중에 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들 위주로 북한식 용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위사실 2: 제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즉결 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3사건 당시 내란행위 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적법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석균 위원과 고원증 제13대 법무부장관(전 육군본부 법무감실 기록심사과장)이 2005년 7월 6일과 7월 26일 서울공증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실시여부와 재판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관여부 등을 대담형식으로 증언하여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4·3전문가 이선교 목사는 고원증 전 기록심사과장으로부터 공증 내용이 사실임을 직접 전해 들었으며 증언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고원증 전 법무부장관의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원증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

“군법회의가 이루어졌다. 제9연대는 1948년 12월에 계엄하에서 실시하였고 제2연대는 1949년 6-7월에 국방경비법에 의거 범법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다. 당시 재판기록을 본 적이 있다. 재판기록이 일단 육군본부 법무감실로 올라와 기록심사를 했는데 내가 당시 기록심사과장으로서는 확인을 하였다. 6·25전쟁 당시 육군본부는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철수하였는데 전선상황이 위급하여 각 국실별로 휴대하지 못하는 것은 소각했다고 들었다. 법무감실의 경우 일부 중요한 서류는 몰라도 소송기록관련 기록물은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소각했거나 유기했다는 말을 들었다. 유기했을 경우 북한군에 의한 노획물로 가져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희박하다고 본다. 소각했을 가능성은 있다. 나는 당시 법무감실 기록심사과장으로 4·3사건 군법회의 관련 진위여부를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기록심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군법회의 결과 사형 언도자는 재판기록을 재확인하고 경무대에서 결재를 받아 해당 부대에 조치하도록 통보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당시 4·3관련 판결문 등(사형수, 무기수, 유기수 재판기록)은 서류가 꽤 양이 많았는데 6월 28일 서울에서 육군본부가 새벽에 갑자기 이동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찢자로 철수하였다. 긴박한 상황에서 육군본부가 철수할 때 재판서류는 가져오지 못했다. 소각 또는 유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갑 제7호증: 고원증, 제13대 법무부장관, 4·3군법회의 관련 고원증 전 법무감실 기록심사과장 증언청취결과, 대담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석균 위원, 2005년 7월 6일, 2005년 7월 26일 2회에 걸쳐 대담함. 갑 제15호증으로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

이와 같은 고원증 전 법무부장관의 증언은 안내판의 내용이 허구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허위사실 3: 1949년 1월 4일 육·해·공 연합 작전, 1월 12일의 ‘의귀리 전투’, 2월 4일의 제주읍 봉개지구 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집단 희생을 당했다.

1949년 1월 12일의 ‘의귀리 전투’는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새벽 5시에 의귀 국민학교에 주둔한 대한민국 국군 제2연대 중대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인민유격대, 자위대 등 200여 명의 폭도가 습격하여 군인 4명(일등상사 문석춘, 일등중사 이범팔, 이등중사 안성혁, 임찬수)이 전사했습니다. 폭도는 51명의 사망자를 내고 패퇴했습니다(갑 제8호증: 나종삼, 제주4·3사건의진상, 아성사, 2013. 3. 20, p.297). 이것은 신생 대한민국에 항적인 내란범죄입니다. 2월 4일의 제주읍 봉개지구 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집단 희생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육·해·공 합동으로 펼쳐진 대규모 작전 지역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2연대가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교전 중 5개월간에 걸쳐 전사한 대한민국정부군 장병의 수는 119명입니다(갑 제9호증: 제주경제일보, 이승학, 제주4·3사건과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 (1) 프롤로그, 2026.04.19.).

허위사실 4: 대표적인 주민 집단 총살 사건인 ‘북촌 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제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북촌 사건’도 원인은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제공한 것입니다. 1949년 1월 16일 조천면 북촌리 개여물 동산(동북리와 김녕리 사이)에서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매복하였다가 함덕 대대 본부에서 구좌면 월정리로 가는 제2연대 3대대 12중대 차량을 기습 공격하여 대한민국 육군 군인 4명 전사,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다음 날 1월 17일에도 북촌 어귀에서 4명이 전사하자 군인들이 북촌리에 폭도 색출을 시도했으나 실패 후 좌익 측 주민들을 의심하여 총살한 사건입니다. 함병선 대령은 북촌리 사건에 관련하여 2연대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왜곡된 보고서 내용]

1월 17일에는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칭 ‘북촌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아침에 세화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중에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그러자 흥분한 군인들이 북촌리를 불태우고 주민 300여 명을 집단 총살한 것이다. 또한 군인들은 살아 남은 주민들 중 함덕리로 소개해 간 북촌리 주민 100여 명을 또다시 총살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로서 대대장 차량 운전수로 차출됐던 김병석은 놀랄만한 증언을 했다. 김병석은 “이미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어 죽였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격포 대신 총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갑 제10호증: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p.314)

[반론]

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주민집단피해사건은 1949년 1월 17일 발생한 북촌사건 외에도 다수 있다. 주민집단피해사건들은 게릴라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군·경에 의한 무고한 양민피해는 주로 이러한 사례에서 존재한다. 보고서의 문제는 집단피해사건을 다룰 때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점이다. 또한 진압군의 피해는 축소 은폐하고 주민피해는 확대 부각시킨다. 폭도가 국군을 공격한 내용, 마을 주민들이 게릴라를 은닉하거나 내통한 사실, 게릴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역한 내용을 은폐한다. 진압군의 게릴라 소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처럼 작성하는 것이다.

북촌리 주민집단피해사건에 관한 정부조사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보고서는 사건의 발단을 1949년 1월 17일 오전 북촌마을 어귀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전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팩트는,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군인 8명과 민간인 운전사 1명이 무장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북촌마을의 경우, 마을 구성원이 좌익성향이 강해 좌익의 해방구였다. 1948년 5월 16일에 북촌마을 사람들이 우도 지서장 양태수 경사 등을 권총으로 쏘아죽이고, 7~8명의 일반인을 끌고 가 죽이려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명된 사건이 있었다. 4·3전문가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은 북촌사건의 실상이 정부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팩트를 기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김영중, 제주4·3사건문과답, 나눔사, 2022, p.334-336).

- 북촌마을은 해방 후부터 좌익세가 강한 ‘민주부락’이었다는 점
- 1947년 8월 13일 북촌리 주민과 경찰관과의 충돌 및 항의시위 사건
- 1948년 2월 9일 순찰경찰관의 권총 피탈사건
- 5·10선거를 보이콧한 마을이고 투표소가 방화로 소실된 사건
- 1948년 5월 16일 북촌항 피항선에 승선한 우도지서장 양태수 경사와 진남양 순경을 살해한 사건
- 북촌 출신 인민유격대가 민간인 14명을 납치, 살해 직전 군부대에 의해 구출된 사건
- 1949년 1월 16일 북촌에서 군인 4명(김원식, 김건조, 김현수, 박병규), 민간인 1명이 폭도의 기습으로 전사
- 1949년 1월 17일 북촌마을 어귀에서 군인 4명(이순범, 이영준, 김선락, 최하중)이 폭도의 기습으로 전사
- 1949년 2월 4일 제2연대 군인이 무기 수송 도중 북촌리 인근에서 매복조에 기습당해 군인 23명, 경찰 1명이 몰사하고, 민간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실

1949년 1월 16일 2연대 3대대가 북촌마을 어귀에서 폭도들의 기습을 받고 군인 4명, 민간인 운전사 1명이 전사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북촌리 어귀에서 재차 기습공격을 받아 군인 4명이 전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폭도들은 북촌리 안으로 도주했으며 당시 폭도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따뜻하였다는 사실에서 폭도가 북촌마을 사람들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대대 군인들이 북촌리 주민들을 집합시켜 폭도를 색출하고자 했으나 폭도가 자수하거나 주민들이 폭도를 신고하지 않았다.

군인은 주민을 폭도의 동조자로 간주하여 집단처형을 한 것이다.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계엄령 선포문 제4호에 의하면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북촌사건은 제주도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였지만 여전히 전쟁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 군인들은 북촌리를 게릴라의 근거지로 간주하여 그곳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였다. 게릴라를 사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총격을 가한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 게릴라가 아닌 무고한 양민에 대한 총격이 있었다면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4·3전문가 이선교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틀간 북촌마을 인구 1,864명 중 120여 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갑 제12호증: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12. 9. 10, p.252-254). 현장에 집결했다가 군인가족으로 총살을 면한 한수섭은 40명씩 2회 80명이 총살당했다고 증언하였다(갑 제13호증: 김영중, 제주4·3사건문과답, 나눔사, 2022, p.335).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1월 17일 300명이 처형당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을 사실인양 기록하고 있다(갑 제14호증: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p.413). 이선교 목사의 120명 주장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조사를 거쳐서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장 사실에 가깝다. 정부보고서는 실제 처형당한 120명보다 180명을 부풀려서 300명이 처형당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또한 집단처형이 인간사냥을 하듯이 학살하였거나 마을 전체를 학살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북촌마을은 게릴라들이 활동하는 교전지역에 해당한다. 집단처형이 있는지 불과 보름후 군경 24명이 북촌마을에서 공비들에 의해서 또다시 전사당했다. 이같은 사건들의 행간을 읽어볼 때 북촌마을은 단순히 양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볼 수 없다. 군인들이 교전지역에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게릴라 소탕을 위한 작전을 전개하여 북촌리지역을 제압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북촌리 사건은 20여 일간 군인, 경찰 등 33명이 3차례의 공비 기습에 의해 전사당했고, 이런 기습공격에 대응한 군인들이 공비들의 은신처로 확인된 북촌마을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벌여 80-120여 명의 집단처형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북촌마을에서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면 그 당시 피해를 알리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억울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촌리 사건 등에서 무고한 양민이었음을 엄격하게 입증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함덕 대대본부로 간 사람들 중에 남로당원으로 지적된 자들은 총살당하였다. 이처럼 진압군이 강경하게 진압한 북촌사건의 소문이 퍼지자 제주도 전 지역의 제주인민군과 협조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진압군에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산에서 자수하러 내려오는 사람이 많았다. 북촌사건은 4·3사건 진압의 분수

령이 되었다(갑 제12호증: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12. 9. 10, p.252-254). 게릴라들의 준동에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인 진압으로 일관했다라면 게릴라 세력은 확산되어 제주도 전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갑 제15호증: 전민정,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2024, p.363-367)

V. 결론

본 사건은 특정 역사관의 차이를 다투는 데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보훈적 성격을 가진 공적비의 원형 훼손, 유족에 대한 절차적 통지 배제, 공공기관 명의 안내판을 통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고소·고발인들은 피고소·피고발인들이 공적비의 소유·관리관계, 이설 절차, 자문단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 안내판 문안 작성·승인 경위, 유족 통지 여부, 안내판 내용의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관련 회의록, 공문, 자문자료, 공사내역, 사진자료, 안내판 문안 작성 경위 및 언론 배포자료 등을 확보하여 공용물손상죄, 재물손괴죄, 사자명예훼손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립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사건 발생 지역의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지역 여론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인들은 서울 소재 수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한 직접 수사 내지 지휘를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2일

서초경찰서 귀중

증거자료

1. 갑 제1호증: 함병선 장군 공적비 이설 전후 사진
1. 갑 제2호증: 2026. 4.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자치국장 면담 결과 기록
1. 갑 제3호증: 제주경제일보, 제주도, '4·3 왜곡 비석'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세우다, 2026.03.29.
1. 갑 제4호증: 현충시설 관련 시정요구 및 면담 요청의 건
1. 갑 제5호증, 전민정, 4·3특별법 왜 위험인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2024. p.209, 297, 368
1. 갑 제6호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12 [북한·러시아·무장대자료편] 목차
1. 갑 제7호증: 고원증, 제13대 법무부장관, 4·3군법회의 관련 고원증 전 법무감실 기록심사과장 증언청취결과, 대담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석균 위원, 2005년 7월 6일, 2005년 7월 26일 2회에 걸쳐 대담함. 갑 제15호증으로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
1. 갑 제8호증: 나종삼, 제주4·3사건의진상, 아성사, 2013. 3. 20, p.297
1. 갑 제9호증: 제주경제일보, 이승학, 제주4·3사건과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 (1) 프롤로그, 2026.04.19.
1. 갑 제10호증: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p.314
1. 갑 제11호증: 김영중, 제주4·3사건문과답, 나눔사, 2022, p.334-336
1. 갑 제12호증: 이선교, 제주4·3사건의 진상,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12. 9. 10, p.252-254
1. 갑 제13호증: 김영중, 제주4·3사건문과답, 나눔사, 2022, p.335
1. 갑 제14호증: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p.413
1. 갑 제15호증: 전민정, 4·3특별법, 왜 위험인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2024, p.363-367